

전주지방법원 2018. 3. 27 선고 2017가단1622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18. 3. 13

판 결선고 2018. 3. 2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전 433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3, 2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벽돌조 칼라강판지붕주택 71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사실

- 1) 원고는 1992. 3. 6. 김제시 C 전 433㎡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1985. 1. 26.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2) 피고의 모 D 및 피고는 약 4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3, 2, 1, 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벽돌조 칼라강판지붕 주택 71㎡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에서 거주하여 왔다.
- 3) 피고는 2004. 3. 28.경 및 2005. 3. 19.경 원고에게 'D이 사망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을 즉시 철거하고,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.
'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.
- 4) D이 사망하였으나,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른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이 사 건 토지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,갑 제4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영상,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,이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신

별지